

광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2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20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204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0. 7. 2.

판결 선고 2020. 7. 16.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2041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20.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7,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공사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유한회사 D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E 외 14필지에 대한 '고흥 F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6. 3. 5.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착공일을 2016. 3. 5.로, 준공일을 2017. 11. 30.로, 계약금액을 670,000,000원으로 하되, 기성금으로 계약금액 중 80%를 공정률에 따라 매월 말 청구 받은 후 45일 후 지급하고, 나머지 20%의 잔금은 준공 후에 지급(분양 및 기성 입금율에 따라 지급)하며, 계약보증금을 67,000,000원으로, 지체상금율을 착공일 기준 0.3%'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고, 2017. 7. 18. 피고에게 계약해지통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2017. 7. 14.자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4. 30.부터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80,600,000원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였다.

1	2016. 04. 30.	50,000,000원
2	2016. 05. 31.	50,000,000원

1	2016. 04. 30.	50,000,000원
3	2016. 06. 30.	30,000,000원
4	2016. 07. 31.	65,000,000원
5	2016. 08. 31.	45,600,000원
6	2016. 09. 30.	22,000,000원
7	2016. 10. 31.	40,000,000원
8	2016. 11. 30.	17,000,000원
9	2016. 12. 31.	12,000,000원
10	2016. 01. 31.	16,000,000원
11	2016. 02. 28.	25,000,000원
12	2016. 03. 31.	89,000,000원
13	2016. 04. 30.	19,000,000원
합계	480,600,000원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16. 7. 12.부터 2017. 6. 21.까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1	2016. 07. 12.	10,000,000원	10,000,000원	2016. 07. 11.
2	2016. 08. 12.	93,000,000원	93,000,000원	2016. 08. 12.
3	2016. 09. 12.	50,000,000원	50,000,000원	2016. 09. 12.
4	2016. 10. 21.	40,000,000원	40,000,000원	2016. 10. 21.
5	2016. 11. 30.	50,000,000원	50,000,000원	2016. 11. 30.
6	2016. 12. 30.	58,000,000원	58,000,000원	
7	2017. 01. 02.	-58,000,000원	-58,000,000원	
8	2017. 01. 02.	58,000,000원	58,000,000원	2017. 01. 02.
9	2017. 02. 01.	18,600,000원	18,600,000원	2017. 01. 24.
10	2017. 04. 01.	12,000,000원	12,000,000원	2017. 03. 21.
11	2017. 04. 28.	37,000,000원	37,000,000원	2017. 04. 28.
12	2017. 06. 21.	80,000,000원	80,000,000원	2017. 06. 20.
합계	448,600,000원	448,6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2, 7, 8, 6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6. 1. 이 사건 공사를 임의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완성하였는바,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330,311,173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금으로 지급한 448,600,000원과 위 추가 지출금 330,311,173원의 합계 778,911,173원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670,000,000원을 뺀 108,911,173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 제4항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2017. 7. 14.자 해지통보에 대하여 2017. 7. 21. 원고에게 '당사는 전년도부터 기성청구서의 금액보다 미지급된 기성금액으로 자재대금지급이 지연되었음에도 준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성실히 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매월 말 청구 받은 후 45일 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가 2016. 4. 30. 청구한 5,000만 원, 2016. 5. 31. 청구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넘긴 2016. 7. 11.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8. 12.에 이르러 9,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6. 30. 청구한 3,000만 원에 대하여도 지급기한을 넘긴 2016. 9. 12.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6. 7. 31. 청구한 6,500만 원을 더하여 볼 때 4,500만 원을 부족하게 지급하는 등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기한을 넘긴 시점에 피고의 청구금액 미만의 기성금을 지급하다가 결국 마지막 대금 지급일인 2017. 6. 20. 기준으로 피고 청구금액보다

3,200만 원을 적게 지급한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매달 지급 청구한 기성금이 실제 기성고율 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청구 당시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그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거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58.3%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상당액은 390,610,000원(670,000,000원 × 0.583)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448,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57,990,000원(448,600,000원 - 390,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매월 말일 원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도 원도급인인 유한회사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월 말일 공정률을 확인하여 기성금 청구를 하여 그 공정률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피고의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공정률이나 기성금 액수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기성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그와 같이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공정률을 상관하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기성금 480,600,000원 중 일부인 448,60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지급한 이유나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③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서, 유한회사 D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공종별 집계표, 기계설비내역, 공정현황 등은 원고 스스로가 작성한 것일 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④ 당심의 G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2017. 7. 21. G은행 직원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성고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신축공사 전체의 공정률이 83%라는 것일 뿐,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공정률을 별도로 구분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세금계산서 발행 합계액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이 58.3%임을 전제로 피고가 기성고율을 초과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혜진

판사김종근

판사이세라